



제311회 임시회

2012.06.13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6월 4일
-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3. 개정이유

- 「사무관리규정」이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으로 개정되었고, 교육감 권한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·검사·수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「사무관리규정」이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으로 개정함(안 제4조)
- 나.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운영평가와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함(안 제5조제29호)

5. 검토의견

- 「사무관리규정」이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으로 규정 명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며, 교육감 권한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·검사·수거 등의 업무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며, 다만 학교급식법 제18조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필요성, 기대효과, 수임능력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[법률 제10046호, 2010.2.26, 일부개정]

제19조(국가행정사무의 위임) 국가행정사무 중 시·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. 다만,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2.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3.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4.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
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8. 평생교육, 그 밖의 교육·학예진흥에 관한 사항
9. 학교체육·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
10.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
11. 교육·학예의 시설·설비 및 교구(教具)에 관한 사항
12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13. 특별부과금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
14. 기채(起債)·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
15.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
16.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17. 그 밖에 당해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

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-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·출장소 또는 읍·면·동(특별시·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·출장소 또는 읍·면·동의 장을 지휘·감독할 수 있다.
-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□ 학교급식법[시행 2012.3.21] [법률 제11384호, 2012.3.21, 타법개정]

제4조(학교급식 대상) 학교급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

제18조(학교급식 운영평가)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·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출입·검사·수거 등)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·시설·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·검사·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,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20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21조(행정처분 등의 요청)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「식품위생법」·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·「축산법」·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·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·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조치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25조(과태료) ①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②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·징수한다.

④ 삭제 <2010.3.17>

⑤ 삭제 <2010.3.17>

⑥ 삭제 <2010.3.17>

□ 학교급식법 시행령[시행 2011.4.5] [대통령령 제22843호, 2011.4.5, 일부개정]

제17조(권한의 위임)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,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